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의안번호	
의결 연월일	

제안연월일 : 2011년 3월 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□ 개정이유

-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,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- 나. 연구단체 등록(등록취소)신청서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.(안 제4조)
- 다.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)

라.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6조)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·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란 조례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부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연구단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되며, 각 연구단체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.

③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·등록취소신청서를 부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가 소속된 의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 활동비 지원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출된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 연구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「의원연구사례집」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